

계약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제도개선 의견 이행
- 감사지적사항 해소 등

2. 주요골자

- 제한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시,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로 제한 금지(제31조 제4항 제1호)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 거부 금지(제31조 제4항 제2호)
- 이행책임이 본회에 귀속되는 업무협약(양해각서, 합의각서 등을 포함한다) 체결에 대해서 법률 검토 실시(제60조 제2항)

3. 시행일 : 2025. . .

계약 규정 일부개정(안)

「계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2.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 · 품질 · 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제51조제1항제4호더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부터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제60조제2항 중 “이행책임이 본회에 귀속되는 협약, MOU 체결 등에”를
“이행책임이 본회에 귀속되는 업무협약(양해각서, 합의각서 등을 포함한다)
체결에”로 한다.

부칙 <2025. . . >

- ① 이 규정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 그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계약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p>제31조(제한경쟁에 의한 계약) ① ~ ③ <생략> ④ <신설></p>	<p>제31조(제한경쟁에 의한 계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한 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style="margin-left: 2em;">1.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p> <p style="margin-left: 2em;">2.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 · 품질 · 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p>	<p>○국민권익위원회 및 해양수산부의 제도 개선 의견 반영</p>
<p>제51조(입찰보증금)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화(수출입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p>	<p>제51조(입찰보증금)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화(수출입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p>	

현행	개정	개정이유
<p>1. ~ 3. <생략></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p> <p>가. ~ 너. <생략></p> <p><u>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u></p> <p>러. ~ 버. <생략></p> <p><u>서. <신설></u></p> <p><u>어. <신설></u></p> <p><u>저. <신설></u></p> <p><u>처. <신설></u></p> <p>5. ~ 7. <생략></p> <p>② ~ ⑤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p> <p>가. ~ 너. <현행과 같음></p> <p><u>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u></p> <p>러. ~ 버. <현행과 같음></p> <p><u>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u></p> <p><u>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u></p> <p><u>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u></p> <p><u>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u></p> <p>5. ~ 7.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국가계약법」 준용</p>
<p>제60조(계약서의 작성)</p> <p>① <생략></p> <p>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인 계약 및 <u>이행책임이 본회에 귀속되는 협약, MOU 체결 등에</u> 대해서는 반드시 본회 변호사 또는 외부 고문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은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제60조(계약서의 작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인 계약, <u>이행책임이 본회에 귀속되는 업무협약(양해각서, 합의각서 등을 포함한다) 체결에</u> 대해서는 반드시 본회 변호사 또는 외부 고문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은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적용대상 명확화 및 감사지적 사항 해소</p>